

「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추석 명절 귀성 등 장거리 운행을 대비하여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차량 안전점검 의식을 확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2조)
- 자동차 안전점검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(안 제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교통안전법」
 - 「자동차관리법」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관내 자동차의 차량 정비 및 안전점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3조는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, 구미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자동차 소모품(위셔액, 오일 및 와이퍼 등)의 교체 지원 등 안전점검 활성화 사업의 실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정비제외 차종에 대한 규정으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